

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변경 동의안

의안 번호	191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2. /0.

제출자 : 안산시장

1. 변경 사유

-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(2008.12.3)에 따른 상임이사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,
-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『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』는 규정(2009.4.1시행)에 저촉된 당연직이사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
 - 상임이사 ⇒ 대표이사
(제6조 제2호 및 제3호, 제7조 제2항 및 제4항 제3호, 제9조 제1항, 제11조 제1항, 제3항, 제5항, 제7항, 제14조 제2항, 제16조 제2항, 제34조)
- 법인 명칭 영문 표기 삽입
 - 제1조 이 법인은 재단법인 에버그린21(EVER GREEN21)이라 한다.
- 지방자치법에 저촉된 당연직 비상임이사 “시의회의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”을 삭제함(제7조 제4항 제4호 삭제)
- 민법 및 환경부장관및 그소속청소관의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민법 또는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(제10조 제5호)
- 조례에서 정한 사항으로 “법인의 직원은 상임이사가 임면한다”를 “법인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”로 변경(제12조 제1항)

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변경 동의안

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제6조 제2호 및 제3호, 제7조 제2항 및 제4항 제3호, 제9조 제1항, 제11조 제1항, 제3항, 제5항, 제7항, 제14조 제2항, 제16조 제2항, 제34조 중 “상임이사”를 “대표이사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 “이 법인은 재단법인 에버그린21(EVER GREEN21)이라 한다”

제6조 제4호 “2.”를 “4.”로 한다.

제7조 제4항 제4호를 삭제한다.

제10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

5.민법 및 환경부장관및그소속청소관의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민법 또는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.

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

①법인의 직원은 상임이사가 임면한다 를 법인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

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6조 조문중 “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 규칙”을 “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”을 준용한다.

정관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명칭)이 법인은 재단법인 <u>에버그린21</u>이라 한다.</p> <p>제6조【임원의 종류와 정수】이 법인에 두는 임원 및 정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상임이사 1인 3.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(이사장 및 <u>상임이사 포함</u>) <p>2. 감사 2인</p> <p>제7조【임원의 선임방법】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생략) ② <u>상임이사의 자격은 환경전문가 환경영업 분야에 이해와 지식이 풍부한 자로 공개모집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</u> ③ (생략) 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~2.(생략) 3. 상임이사 4. 시의회의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<p>제9조【임원의 임기】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<u>상임이사 및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</u> ②~③(생략) <p>제10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4. (생략) 5. <u>민법 및 환경부장관및 그소속청소관의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때</u> 	<p>제1조(명칭)이 법인은 재단법인 <u>에버그린21(EVER GREEN 21)</u>이라 한다.</p> <p>제6조【임원의 종류와 정수】이 법인에 두는 임원 및 정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대표이사..... 3.(.....대표이사 4. <p>제7조【임원의 선임방법】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(현행과 같음) ② 대표이사..... ③(현행과 같음) 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~2.(현행과 같음) 3. 대표이사 4. 삭재 <p>제9조【임원의 임기】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대표이사..... ②~③(현행과 같음) <p>제10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4. (생략) 5. 민법 또는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때

정관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 【임원의 직무】</p> <p>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단,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<u>상임이사</u>,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상임이사</u>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관리·감독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<u>상임이사</u>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는 당연직 이사인 시 환경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필요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⑥ (생략)</p> <p>⑦ <u>상임이사</u>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, <u>상임이사</u>는 이사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</p>	<p>제11조 【임원의 직무】</p> <p>①..... 대표이사,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대표이사....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대표이사.....</p> <p>⑥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대표이사..... ..., 대표이사.....</p>
<p>제12조 【직원의 임면】</p> <p>① 법인의 직원은 <u>상임이사</u>가 임면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2조 【직원의 임면】</p> <p>①..... 이사장이.....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 【임·직원 보수】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상임이사</u>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수당, 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 【임·직원 보수】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 ② 대표이사.....</p>
<p>제16조 【이사회의 구성】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<u>상임이사</u>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</p> <p>③~④(생략)</p>	<p>제16조 【이사회의 구성】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 ②..... 대표이사..... ③~④(현행과 같음)</p>

정관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4조 【고시 및 공고】</p> <p>법인이 고시 및 공고할 사항은 시의 시보 또는 신문 등에 게재 한다. 다만, <u>상임이사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4조 【고시 및 공고】</p> <p>.....</p> <p>..... 대표이사</p> <p>.....</p>
<p>제36조(준용규정)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, 비송사건 절차법, <u>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을 준용한다</u>.</p>	<p>제36조(준용규정)-----</p> <p>-----</p> <p>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</p>